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운영현황 및 효율화 방안

선희성 | 조공장

연구진

연구책임자 선호성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진 조공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

© 2015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발행인 박광국

발행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우편번호) 30147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쇄 2015년 10월 15일

발행 2015년 10월 19일

등록 제17-254호(1998년 1월 30일)

ISBN 978-89-8464-941-5 93530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 표시해 주십시오.

선호성, 조공장. 2015.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운영현황 및 효율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값 5,000원

서 언

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개발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방하는 수단으로서의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의 환경 보전을 위한 필수적인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시·도의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한 환경영향평가법의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여건 등의 상이함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운영현황은 많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실질적 운영에 따른 현실적인 한계 등으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현황파악을 통한 문제점 분석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행 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적 관점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이 실현되길 기대해 봅니다.

본 연구를 수행해 주신 선효성 박사를 비롯하여 연구진으로 참여한 조공장 박사의 노고에 감사를 표합니다.

2015년 10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 장 박 광 국

국문 요약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조례의 도입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한 운영현황을 파악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과 환경기본조례의 내부에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의 별도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근거 규정이 없어 시행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도입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로 환경영향평가를 전담하기 위한 부서의 마련과 함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담당 인원의 충당이 필요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다양한 전문가 구성을 통한 심의회의 등의 효율적 운영방법을 통해 평가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규제의 수단이라는 인식, 협의업무의 전문성 미흡 및 인력 부족, 심의위원회 전문가 인력 구성의 한계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도입, 대상사업의 차별화, 절차의 차별화를 제안하였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별도 조례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조례 도입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을 선정하여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의 동일성에 따른 평가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절차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조례

차 례

제1장 서론	1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4
1. 환경영향평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4
가. 조례 절차 및 내용	4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5
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7
2. 환경기본조례 내부에 환경영향평가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8
제3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10
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담당 부서 및 인원	10
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 실적	11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12
제4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 사례	13
1. 서울특별시	13
가. 도입 배경	13
나. 담당 부서 및 주요 업무	13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	14
라. 연도별/사업유형별 운영 실적	14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절차	16

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7
2. 제주특별자치도	18
가. 도입 배경	18
나. 담당 부서 및 주요 업무	19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	19
라. 연도별/사업유형별 운영 실적	19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절차	21
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24
제5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방안	25
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25
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25
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한계	26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27
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방안	27
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도입	28
나. 대상사업의 차별화	28
다. 절차의 차별화	29
제6장 결 론	31
참고문헌	35
Abstract	37

표 차례

<표 2-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절차 및 내용 비교	6
<표 2-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7
<표 2-3> 환경기본조례 내부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규정내용 비교	9
<표 3-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 비교	11
<표 3-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비교	12
<표 4-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	15
<표 4-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	20

그림 차례

〈그림 3-1〉 환경영향평가 전담부서 존재 여부(좌측) 및 담당 인원수(우측) 분포	10
〈그림 4-1〉 서울특별시 연도별 및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 운영건수 분포	14
〈그림 4-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17
〈그림 4-3〉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및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 운영건수 분포	19
〈그림 4-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23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계획의 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관점에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에서는 이러한 취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지역적인 특성 및 그에 따른 환경적 영향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는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사업을 시행할 때에 환경오염과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실시와 관련한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 시행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등을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개별적인 조례를 가지고 있으며 경기도 등을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환경기본조례의 내부에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규정을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실태 파악은 미흡한 실정이다. 서울특별시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관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운영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확한 운영현황의 파악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조와 인식 제고를 위해 현재의 조례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실태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조례의 도입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조례의 도입 및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조례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규정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현재의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등을 포함한 실제 운영 성과 및 현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한 인터뷰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조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였다.

제2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황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조례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6개의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된 1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곳은 8개의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이다. 이외에 7개의 지역(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은 환경기본조례의 내부에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구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환경기본조례 내부에 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구분하여 그에 따른 현황을 살펴보았다.

1. 환경영향평가의 별도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가. 조례 절차 및 내용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절차 및 내용을 비교한 것이 <표 2-1>이다.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실시하는 평가준비서에 대한 검토 및 심의 절차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경상남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제도를 마련하여 협의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사전에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상기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을 포함한 간략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의견수렴, 협의내용 관리 등을 포함하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평가절차의 내용들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및 내용 등과 관련한 규정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을 기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현황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독자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제외한 개발계획을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내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가 규정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를 비교한 것이 <표 2-2>이다. 제주도의 경우 도시개발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뿐만 아니라 양식장 및 건축물 설치의 추가적인 개발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개간 및 매립, 산지 개발, 토석채취 등과 같이 특정한 사업을 지정하여 검토하는 양상도 보여주고 있다.

〈표 2-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절차 및 내용 비교

구분	조례 절차 및 내용
서울특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칙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 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 등 -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등 : 협의내용 통보, 협의내용 관리·감독 등 - 환경영향평가심의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 : 작성계획서, 분야 및 항목 등
강원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대상사업, 분야 및 항목 등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등 : 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 평가서의 협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등 - 협의내용 관리 등 :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등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대상사업, 분야 및 항목 등 -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 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 등 -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 협의내용 통보 및 관리·감독, 이의신청 등 -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등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등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대상사업, 분야 및 항목 등 -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의견수렴 등 : 평가서 작성, 의견수렴 등 -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등 : 협의내용의 통보 등 - 이의신청 등 : 이의신청심의위원회 등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 간이평가절차 등
광주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평가서 작성, 의견수렴, 협의, 협의내용관리 등의 평가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
대전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평가서 작성, 의견수렴, 협의, 협의내용관리 등의 평가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
부산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 평가서 작성, 의견수렴, 협의, 협의내용관리 등의 평가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
인천광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 환경영향평가 심의 : 환경정책위원회 등 - 평가서 작성, 의견수렴, 협의, 협의내용관리 등의 평가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

자료: 저자 작성.

〈표 2-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구분	서울	강원	경남	제주	광주	대전	부산	인천
도시의 개발	√		√	√	√	√	√	√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		√	√	√	√		√
에너지 개발	√		√	√	√	√	√	√
항만의 건설				√			√	
도로의 건설	√		√	√	√	√	√	√
수자원의 개발				√				
철도(도시철도를 포함)의 건설	√		√	√	√		√	
하천의 이용 및 개발	√		√	√	√	√	√	√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	√	√			√	√
관광단지의 개발	√		√	√	√	√	√	√
산지의 개발	√	√	√	√	√	√	√	√
특정 지역의 개발				√				√
체육시설의 설치	√		√		√	√	√	√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	√	√	√	√	√
국방·군사 시설의 설치	√				√		√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	√	√	√	√	√	√
육상어류 양식장의 설치				√				
건축물의 설치				√				

자료: 저자 작성.

다.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분야 및 항목으로 자연 생태환경분야, 대기환경분야, 수환경분야, 토지환경분야, 생활환경분야, 사회환경·경제환경 분야를 포함한 21개를 지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환경영향평가의 별도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중 5개의 지역(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은 21개의 평가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개의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는데 해양과 관련한 개발계획이 없는 관계로 해양환경 평가항목을 제외하고 있다.

2. 환경기본조례 내부에 환경영향평가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환경기본조례의 내부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비교한 것이 <표 2-3>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어의 표현(지역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성 평가, 환경영향 검토 등)이 상이하므로 용어의 통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례를 제정한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표 2-3〉 환경기본조례 내부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규정내용 비교

구분	환경기본조례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규정내용
경기도	제17조(지역 환경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환경에 두드러지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도 환경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제18조(환경영향성 평가) ①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제14조(환경영향평가) ① 도는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게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제14조(환경영향 검토) ① 도지사는 도 또는 시·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제17조(환경영향 검토) 도지사는 도 및 시·군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북도	제14조(환경영향 검토) ① 도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시행할 수 있다.
경상북도	제14조(환경영향 검토) ① 도지사는 시장·군수 및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자료: 지방자치단체별 환경기본조례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인용.

제3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16개의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담당 부서 및 인원

1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환경영향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평가부서를 따로 마련하여 시행하는 곳은 2개의 지역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환경정책과 등의 부서에서 환경적인 업무에 통합해 시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이 0.5~3명 정도로 배정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담당 인원의 충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1〉 환경영향평가 전담부서 존재 여부(좌측) 및 담당 인원수(우측) 분포

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 실적

1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조례규정에 의해 실제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지역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별도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이외의 지역은 관련 조례 미제정 등의 사유로 실시된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별도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운영실적을 비교한 것이 <표 3-1>이다. 환경영향평가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건수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의 경우에도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시행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된 사업유형의 경우 도시개발, 관광사업, 토석채취, 하천조성, 도로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항만건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 비교

구분	운영건수(개)	사업유형
서울특별시	128	도시개발 등
강원도	8	리조트, 석산개발 등
경상남도	29	도시개발, 하천조성, 도로건설, 토석채취 등
제주특별자치도	185	건축물, 관광사업, 가축분뇨처리시설, 양식장 등
광주광역시	6	-
대전광역시	5	도시개발, 체육시설 등
부산광역시	30	건축물, 도로건설, 항만건설 등
인천광역시	8	도시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도로, 골프장 등

자료: 저자 작성.

3.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별도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현황을 비교한 것이 <표 3-2>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정책위원회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15~60명 정도 규모의 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의회의, 서면심의, 현지조사 등의 다양한 운영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에 포함된 위원들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을 포함한 당연직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을 포함한 환경분야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건설 및 토목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풀을 활용하여 운영되고 있다.

<표 3-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현황 비교

구분	명칭	인원수(명)	운영방법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60	심의회의
강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5	서면심의
경상남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45	현지조사 및 서면심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15	대면심의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15	자문회의 및 서면회의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15	자문회의
부산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21	심의회의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30	심의회의

자료: 저자 작성.

제4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 사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인한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1. 서울특별시

가. 도입 배경¹⁾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대규모 개발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고밀도로 개발된 서울의 경우 대형건물 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도시형 개발사업의 사전관리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근거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평가절차와 실효성 제고수단 모색을 통해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서울특별시 조례 제3985호, 2002. 3. 20.) 및 동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규칙 제3265호, 2002. 6. 25.)을 제정·공포하였으며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담당 부서 및 주요 업무²⁾

서울특별시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협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후환경본부

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http://eims.seoul.go.kr/eims/EnvInfo.do?method=getEnvInfoPage> [2015.8.24].
 2) 서울특별시청, http://namesearch-app.seoul.go.kr/main/org/org_chart_bon.jsp?dept_cd=13010000 [2015.8.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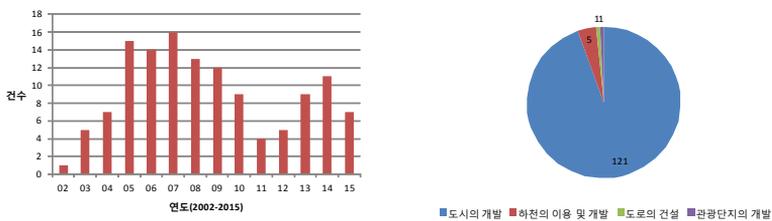
환경정책과의 하부 조직으로 환경조정평가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조정평가팀의 주요 업무는 환경분쟁의 조정과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팀장을 포함한 7명(환경분쟁 조정:4명, 환경영향평가 협의:2명)의 담당자를 포함하고 있다.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 등을 포함한 11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유형별에 따른 대상규모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표 4-1>이다.

라. 연도별/사업유형별 운영 실적

서울특별시에서 진행하였던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의 연도별 및 사업유형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4-1>이다.³⁾ 연도별에 따른 운영건수의 변화를 보여 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도시의 개발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1> 서울특별시 연도별 및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 운영건수 분포

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http://eims.seoul.go.kr/eims/EvlComptBsns.do?method=getYearList> [2015.8.25].

〈표 4-1〉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

분야	사업	규모
도시의 개발	도시개발사업	7만5천㎡ 이상 25만㎡ 미만
	정비사업	9만㎡ 이상 30만㎡ 미만
	도시계획시설사업	
	- 유통업무설비	10만㎡ 이상 20만㎡ 미만
	- 주차장시설	10만㎡ 이상 20만㎡ 미만
	- 시장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9만㎡ 이상 30만㎡ 미만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	9만㎡ 이상 30만㎡ 미만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10만㎡ 이상 20만㎡ 미만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의 조성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10만㎡ 이상 20만㎡ 미만
	물류터미널 또는 물류단지 개발사업	10만㎡ 이상 20만㎡ 미만
에너지 개발	건축물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
	산업단지개발사업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단지조성사업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도로의 건설	공업용지 조성사업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7만5천㎡ 이상 15만㎡ 미만
	지상송전선로 설치사업	154kV 이상
철도의 건설	저유시설 설치공사	5만㎥ 이상 10만㎥ 미만
	저유시설 또는 석유비축시설 설치공사	5만㎥ 이상 10만㎥ 미만
하천 이용·개발	- 신설	2km 이상 4km 미만
	- 확장(2차로 이상)	5km 이상 10km 미만
관광단지의 개발	- 삭도	1km 이상 2km 미만
	- 궤도	2km 이상 4km 미만
	하천공사	3km 이상 10km 미만
	관광사업	15만㎡ 이상 30만㎡ 미만
산지의 개발	공원사업	5만㎡ 이상 10만㎡ 미만
	공원시설 설치사업	5만㎡ 이상 10만㎡ 미만
체육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묘지공원 설치사업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	6만㎡ 이상 20만㎡ 미만
국방·군사 시설	체육시설 설치공사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
	소각시설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
	국방·군사시설 사업	16만5천㎡ 이상 33만㎡ 미만

자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참조.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절차⁴⁾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주관구청장은 접수된 작성계획서를 시장 및 사업지역 관할구청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이에 따라 시장은 제출된 작성계획서를 검토함에 있어 전문기관(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주관구청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한다. 주관구청장은 검토결과 및 의견수렴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평가서 초안에 반영하게 된다.

사업자는 평가서 초안을 작성한 이후에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안의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서 초안 및 그에 따른 요약서를 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주관구청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평가서 초안을 받은 주관구청장은 이를 공고하여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사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관할구청장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수렴한다.

시장은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결과가 반영된 평가서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가관장 등에게 사업계획 등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를 승인가관장 등에게 통보하고 승인가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승인가관장 등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요청을 받은 시장은 조정요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조정요청을 받은

4)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인용.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기관장 등에게 통보한다.



자료: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http://eims.seoul.go.kr/eims/EnvInfo.do?method=getEnvFlowView> [2015.8.25].

〈그림 4-2〉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5)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6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기후환경본부장,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5)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인용.

호선하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게 되는데 공무원, 교수, 시의원, 연구원 종사자(서울연구원 등), 공기업 종사자(한국토지주택공사 등), 환경단체(환경운동연합 등)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 심의, 이의 신청에 따른 조정요청,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면제 여부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2. 제주특별자치도

가. 도입 배경⁶⁾

제주도 실정에 맞고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환경영향평가 시행을 위해 2001년에 제주도 통합(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다. 이후 2006년에 제주특별법 제정 시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권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일부 이양하여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중 민간개발사업에 대한 협의권과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도지사(지방공기업)가 시행주체인 사업 이외의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지 않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고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확대 등을 포함한 통합영향평가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11년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라는 규정을 바탕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http://jejuenv.jeju.go.kr/contents/index.php?mid=02&ssso=ok> [2015.8.26].

나. 담당 부서 및 주요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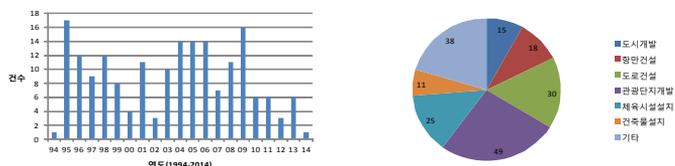
제주특별자치도의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협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보전국 환경자산보전과의 하부 조직으로 환경평가계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평가계의 주요 업무는 환경영향평가 등의 검토 및 협의로 3명의 담당자를 포함하고 있다.

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도시의 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16개 분야 34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의 유형별에 따른 대상규모의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표 4-2>이다.

라. 연도별/사업유형별 운영 실적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진행하였던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의 연도별 및 사업유형별 분포를 보여주는 것이 <그림 4-3>이다.⁸⁾ 연도별에 따른 운영건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관광단지 개발, 도로 건설, 체육시설 설치, 항만 건설 등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3> 제주특별자치도 연도별 및 사업유형별 환경영향평가 운영건수 분포

7)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www.jeu.go.kr/index.jeu?menuCd=DOM_000000323012001002&sso=ok#1000011002003 [2015.8.28].

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http://jeuenv.jeu.go.kr/contents/index.php?mid=0208&sso=ok> [2015.8.31].

〈표 4-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

분야	사업	규모
도시의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15만제곱미터 이상
	정비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유통업무설비, 주차장시설, 시장)	10만제곱미터 이상
	대지조성사업 또는 주택건설사업	15만제곱미터 이상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 주택지구 조성사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물류터미널 설치공사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단지조성사업	
	자유무역지역을 지정	
	공장의 설립	
에너지 개발 사업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154킬로볼트 이상
	전원개발사업 또는 전기설비(지상 송전선로(선로길이 10킬로미터 이상), 옥외 변전소)	
항만의 건설 사업	어항시설 건설사업 또는 어항개발사업, 항만시설, 신항만 건설사업	길이 200미터 이상 또는 공유수면 1만제곱미터 이상의 매립
도로의 건설 사업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지하도로 신설	1킬로미터 이상
수자원의 개발사업	댐 및 하천부속물 중 하구언의 설치공사	총 저수용량이 30만제곱미터 이상
삭도·궤도의 건설사업	삭도사업 및 궤도사업	2킬로미터 이상 (궤도)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하천구역 또는 홍수관리구역(하천공사 또는 하천복개공사)	5킬로미터 이상 (하천공사)
		3만3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킬로미터 이상 (하천복개공사)
매립 및 개간사업	매립사업	10만제곱미터 이상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50만제곱미터 이상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관광사업	5만제곱미터 이상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10만제곱미터 이상
	온천공보호구역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참조.

〈표 4-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종류 및 규모(계속)

분야	사업	규모
산지의 개발 사업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 사업, 초지의 조성 이외의 사업)	10만제곱미터 이상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
폐기물처리 시설·분뇨 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	분뇨처리시설 또는 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 처리시설(매립시설)	1일 50킬로리터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또는 매립용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골재채취예정지	5천제곱미터 이상
육상어류 양식장의 설치사업	육상해수양식어업 또는 종묘 생산어업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의 설치사업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지역 및 도시계획구역외의 지역 절대·상대보전지역 또는 경관보전지구 1·2등급 지구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별표 1 참조.

마.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 절차⁹⁾

도지사는 승인기관의 장이 평가항목·범위 등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다. 평가서 초안이 접수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 등을 중심으로 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의견수렴과정을 진행하게

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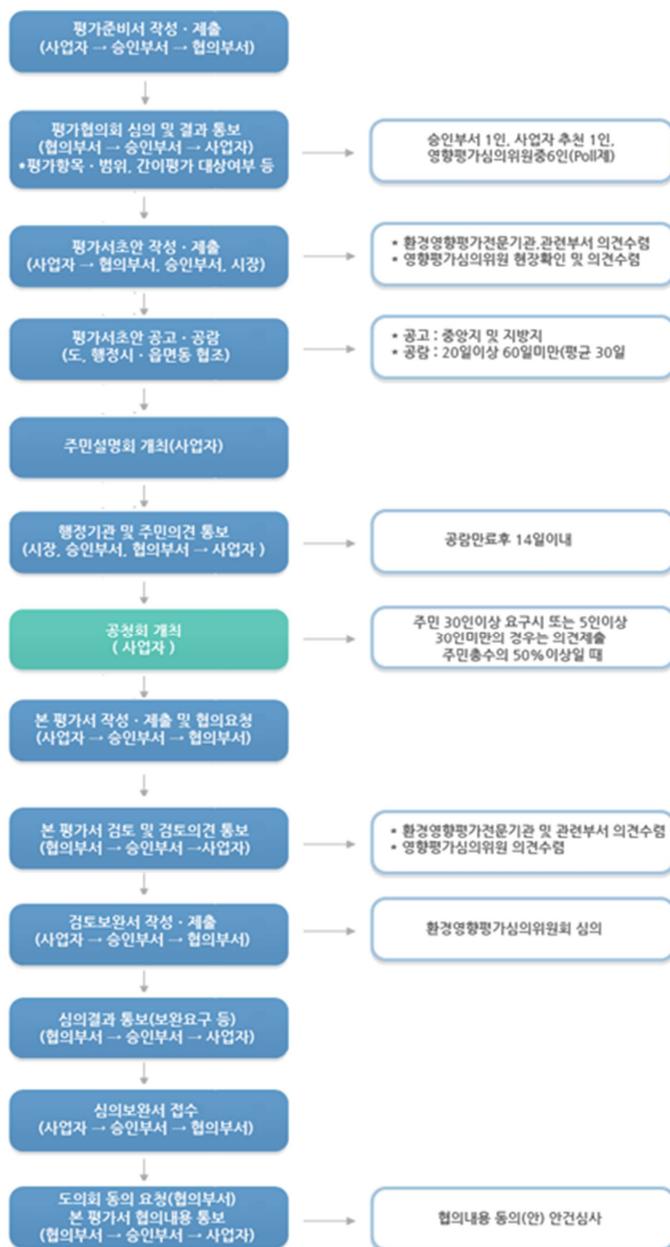
된다. 이와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등을 포함한 관련 기관의 의견수렴을 종합한 검토의견을 송부하게 된다.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할 때에는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지역주민은 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 주관 시장 또는 관계 시장에게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을 받기 전에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승인기관의 장은 도지사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 등의 조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나 사업계획 등을 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협의 및 보완서 검토가 끝나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도의회로부터 동의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 협의내용을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도지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평가서협의내용이의신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료: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http://jejuenv.jeu.go.kr/contents/index.php?mid=0204&ssso=ok> [2015.8.31].

〈그림 4-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¹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검토 및 제도개선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교수, 환경단체 등)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국장 및 지하수업무 담당국장(또는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평가서 내용의 사전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 확인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0)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관련 내용을 인용.

제5장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방안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조례 절차 및 내용의 검토, 심의위원회 등을 포함한 운영현황의 비교,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한 운영 사례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황조사결과와 더불어 현 단계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시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1.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살펴보기 위해 16개의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별도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가.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필요성

16개의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8개 지역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규정된 대상사업 미만의 소규모 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 유도 및 관리,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특정지역 보존 및 특정사업 제한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반면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의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축소,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시행에 따른 규제 및 절차의 강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수행을 위한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가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정 및 시행에 따른 한계

1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실제 시행으로 인한 한계 및 애로사항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이 규제의 수단이라는 인식
-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의 전문성 미흡 및 인력 부족
- 환경영향평가법의 잦은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 업무부담 증가
-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인력 구성의 한계
-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한 평가기준 부재 및 개발사업부서와의 업무협조의 어려움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1항 후단의 “다만, ~”이란 조항 신설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의 무력화
 -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1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해 환경부나 KEI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별도 조례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에 대한 개정 검토
-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규정(환경영향평가준비서 작성 생략, 평가항목 결정 및 공고 단계 생략 등) 마련
-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법률 및 제도 개선(명확한 평가기준 설정 및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마련 등)
- 환경부 협의절차에 준하여 KEI의 검토 지원 등의 근거 규정 검토
-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사업별 검토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등 제공, KEI의 시·도 또는 권역별 순회 교육 등) 마련

2.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효율화 방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효과 및 한계 등에 대한 설문조사의 결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된 환경영향평가 시행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제도적 장치의 미비, 실제 업무 진행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개발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환경적 영향의 사전 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의 근본적인 취지를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인식의 전환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의 현실성 및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효율화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조례 도입, 대상사업의 차별화, 절차의 차별화를 제안하였으며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환경영향평가 조례 도입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제3항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규정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거나 환경기본조례에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다. 특히, 환경기본조례에 환경영향평가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상사업 및 절차 등에 대한 별도의 조례 제정의 근거가 있지만 실현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여건 등에 따른 높은 개발압력과 난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을 유도하여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나. 대상사업의 차별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국가가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제외한 개발계획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열거하고 있으나 국가가 수행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과의 중복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를 특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건축물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양식장 및 건축물 등의 추가적인 개발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강원도의 경우 대상사업 중에서 개간 및 매립, 산지 개발, 토석채취 등의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지역개발계획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 대상사업의 특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관리 지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 적용을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대상사업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의 경우에도 중점 항목만을 선정하여 평가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육상어류양식장 개발계획에서는 해양환경, 해양동식물상, 토지이용, 경관을, 건축물 개발계획에서는 토지이용, 동식물상, 경관, 수질을 평가항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대상사업뿐만 아니라 평가항목을 특정시키면 지역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고 관련 업무 및 절차의 현실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절차의 차별화

국가가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차이점 중의 하나로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의 구분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시청 및 도청을 중심으로 한 승인기관과 그 내부에서 진행되는 심의위원회 및 환경평가부서 등을 포함한 협의기관이 동일하여 평가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문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절차상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영향평가 조례에서는 평가서 작성, 의견수렴,

협의, 협의내용관리 등의 평가절차 등은 환경영향평가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제도 적용의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차별화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평가서 작성, 의견수렴, 협의 등의 일반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심의위원회, 이의신청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도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의 동일성에 따른 평가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이나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KEI의 검토 지원 등을 생각할 수 있다.

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조례의 도입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1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에 포함된 환경영향평가 규정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조례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을 포함한 실제 운영 성과 및 현황 등에 대한 설문 및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례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과 환경기본조례의 내부에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내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별도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항목,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등을 포함한 절차 및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도시개발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발계획을 포함하거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특정 사업을 지정하여 검토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환경기본조례의 내부에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규정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만 그에 따른 후속적인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16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2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 환경정책과 등의 부서에서 환경적인 업무에 통합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담당 인원이 0.5~3명 정도로 배정되어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담당 인원의 충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을 살펴

본 결과 환경영향평가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건수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환경기본조례의 내부에 환경영향평가 규정을 내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실적이 없어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의 경우 15~60명 정도 규모로 환경분야 등을 포함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운영을 통해 심의회의, 서면심의, 현지조사 등의 운영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시행으로 인한 실제 운영 사례를 살펴보았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대형건물 건축사업이나 재개발사업 등 도시형 개발사업의 사전관리체계를 위해 시행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조정평가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평가서 작성 및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통해 협의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과정을 통해 이해당사자 상호 간의 충분한 합의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도 실정을 고려하여 자연자원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환경평가계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경우 도시의 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육상어류 양식장 및 건축물 등의 특정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운영실적의 경우 관광단지 개발, 도로 건설, 체육시설 설치, 항만 건설 등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가서 작성의 단계에서 현장조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동의의 받게 된다. 또한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을 마련하여 이해당사자 상호 간의 충분한 합의를 통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소규모 사업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 유도 및 관리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대상사업의 축소, 규제 및 절차의 강화, 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불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한계점으로 규제의 수단이라는 인식, 협의업무의 전문성 미흡 및 인력 부족, 심의위원회 전문가 인력 구성의 한계, 개발사업부서와의 업무협조의 어려움 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규정,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 KEI의 검토 지원,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효율화 방안으로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특성 및 여건 등에 따른 높은 개발압력과 난개발 등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둘째, 국가가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중복을 피하고 지역개발계획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한 대상사업 및 평가항목의 특정이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관리지역 내 소규모 개발사업 적용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의 특성 및 여건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의 차별화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승인기관과 협의기관의 동일성에 따른 평가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위한 KEI의 검토 지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환경기본조례.
-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 환경영향평가법.

<온라인 자료>

- 서울특별시청. [http://namesearch-app.seoul.go.kr/main/org/org_chart_bon.jsp? dept_cd=13010000](http://namesearch-app.seoul.go.kr/main/org/org_chart_bon.jsp?dept_cd=13010000) [2015.8.24].
- _____. 2013.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http://eims.seoul.go.kr> [2015.10.1].
- _____. 2015. 「서울특별시 -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http://www.seoul.go.kr> [2015.10.5].
- 제주특별자치도청. [http://www.jeu.go.kr/index.jeu? menuCd=DOM_000000323012001002&sso=ok#1000011002003](http://www.jeu.go.kr/index.jeu?menuCd=DOM_000000323012001002&sso=ok#1000011002003) [2015.8.28].
- _____. 199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http://jeuenv.jeu.go.kr> [2015.9.21.].
- _____. 2015. 「제주특별자치도」. <http://www.jeu.go.kr> [2015.9.23].

Abstract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dinance Operating Status and Efficiency Measures

This study analyzes the introduction of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regulations relating to the Impact Assessment proposes an efficient management plan was accordingly identify the municipaliti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dinance analysis and operational status through a questionnaire for this purpose.

Local governments can be divided into separate areas that hold local and environmental regulations, which involv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s in the interior of the basic regulations for the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 relation to the regulations. In particular, given that if the local government does not have a separate bylaw enforcement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not based regulation is not being properly it is necessar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dinance introduced for the induc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Municip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o operational status as a person in charge discussed the results obtained with the provided cover for the efficiency of the department to deliver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required. 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ethods are provided that can be made based on a relatively active in the case of Seoul and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activated an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s required. It is also necessary expertise and direction setting that can secure the transparency of rating methods, such as through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uncil review committee can be seen as a characteristic of municip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rough various expert configuration.

Municipal environmental awareness of regulatory measures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impact assessment, lack of expertise and shortage of business consultation, consideration was given to issues such as limitations of the expert committee staffing. In this research direction for improving th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s introducing differentiated targets businesses, it proposes to differentiate procedures. If local governments do not have separate regulations relating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s should be a priority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rdinance introduced and selecting the target business, and assessment items considering such characteristics and circumstances local authorities and of the identity of the authorized institutions and consultation institutions the provision of procedures for the evaluation of the adequacy and transparency is required.

Keywords : Municipalities,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view Committee, Regulations

연구진 약력

선효성

서울대학교 공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현)

E-mail : hssun@kei.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소음·진동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연구」(20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소음원 종류에 따른 3차원 소음예측모델 적용방안 마련」(201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공장

Tokyo Institute of Technology 공학 박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현)

E-mail : kjcho@kei.re.kr

주요 논문 및 보고서

「대규모 개발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방안 연구」(2013,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스코핑) 활성화 방안 연구」(2013, 환경부)

| KEI Working Paper 목록 | 2013~2015

- 2015년
- 2015-01 싱크홀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김윤승)
 - 2015-02 이슈스캐닝(Horizon Scanning)기법 활용을 통한 물환경관리 부문 이머징 이슈 발굴 연구(한혜진)
 - 2015-03 기후경제통합-지역평가모형(Regional Integrated Assessment Model of Climate and the Economy) 비교분석 및 국내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황인창)
 - 2015-04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환경 근로자의 작업역량 저하 추정과 공간적 군집 파악 (김동현)
 - 2015-05 환경영향평가 설명회·공청회 운영현황 분석(조공장)
 - 2015-06 도로 및 철도 사업의 토양분야 환경영향평가 사례 연구(신경희)
 - 2015-07 빅데이터를 활용한 환경보건서비스에 관한 기초연구(간순영, 윤성지)
 - 2015-08 자원순환분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임혜숙)
 - 2015-09 내륙습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개선방안 연구 I
 - 환경부 전국내륙습지 조사 지침(2011)의 적용을 중심으로(방상원)
 - 2015-10 자원순환성 평가제도 대상 확대를 위한 기초연구(이소라)
 - 2015-11 환경소음 빅데이터의 정책 활용성 제고 방안(박영민)
 - 2015-12 인과지도(Causal Loop)를 활용, 미래 물수급관리 정책 지원을 위한 기초연구 (류재나)
 - 2015-13 생물안전 법제 기초연구(홍현정)
 - 2015-1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운영현황 및 효율화 방안(선효성)
 - 2015-15 개발사업의 비점오염 영향평가방법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이진희)
 - 2015-16 환경영향평가제도에서의 생태계보전협력금 활용 개선방안(이상범)
 - 2015-17 환경가치 증장기 연구수요 조사(곽소윤)
 - 2015-18 세종특별자치시의 대기질 관리 기획 연구(심창섭)
 - 2015-19 2015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곽소윤)
- 2014년
- 2014-01 국내 지하수의 자원·환경적 가치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현윤정)
 - 2014-02 층간소음의 건강영향에 대한 기초연구(박영민)
 - 2014-03 소음원 종류에 따른 3차원 소음예측모델 적용방안 마련(선효성)
 - 2014-04 개발사업 입지 및 계획기준의 조사·분석에 관한 연구(주용준)
 - 2014-05 기후변화 취약 근로 직종 파악을 위한 기초 연구(김동현)
 - 2014-06 불확실성을 고려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안전율 산정 기초연구(정선희)
 - 2014-07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공간계획 수립 시 도시/환경/방재분야 공간정보 연계·활용방안 연구(김태현)
 - 2014-08 기후변화를 반영한 내수침수 리스크 평가 방법론 고찰(류재나)
 - 2014-09 SEA 사후관리를 위한 해외 사례연구(조한나)

- 2014-10 농어촌 관련 정책 및 계획에서의 기후변화 적응 고려 방안(임영신)
- 2014-11 소음·진동 사후관리를 위한 기초연구(선효성)
- 2014-12 2014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이미숙)

- 2013년**
- 2013-01 토양자원 유실 최소화를 위한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사례 연구(신경희)
 - 2013-02 PM-2.5 환경영향평가 방안 연구(이영수)
 - 2013-03 지자체 적응대책 수립지원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자료 활용 방안(정휘철)
 - 2013-04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지역 지질재해 리스크 체계 마련(이명진)
 - 2013-05 비전통가스 개발의 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조한나)
 - 2013-06 모니터링을 통한 친환경 계획기법의 적절성 검증 기초연구 - 도시공간에서의 stepping stone을 중심으로(최희선)
 - 2013-07 국가와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계강화 방안(임영신)
 - 2013-08 KEI 환경정보체계 발전방안(전성우)
 - 2013-09 도시하천 유역의 환경평가 방법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홍현정)
 - 2013-10 제조업 환경비용의 국제비교(조일현)
 - 2013-11 바이오가스의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에 관한 해외사례 분석(조지혜)
 - 2013-12 자연경관심의제도의 현황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주용준)
 - 2013-13 층간소음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박영민)
 - 2013-14 지속가능성 관점에서의 산업구조 변화 분석(이미숙)
 - 2013-15 KEI 중국환경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추장민)
 - 2013-16 기후변화 적응관련 취약계층 지원대책 현황조사 및 분석 연구(신지영)
 - 2013-17 한국 ODA사업의 환경평가 모니터링 현황과 해외사례 비교 연구 - 사업 종료 후 모니터링 사례를 중심으로(김태형)
 - 2013-18 국내 전략환경평가의 사회-경제성 부문 기능 확립을 위한 기초연구(이상윤)
 - 2013-19 환경영향평가시의 시설별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을 위한 기초연구 (주현수)
 - 2013-20 지형장애물 분석을 통한 환경현황자료 작성방안(김지영)
 - 2013-21 상수원보호구역 상·하류의 수변지역 관리방안 연구 - 잠실상수원 보호구역과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구간 중심으로(김태윤)
 - 2013-22 2013 국민환경의식조사 연구(이미숙)

※ KEI 설립 이후 현재까지의 보고서 원문은 KEI 홈페이지(www.kei.re.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KEI Working Paper 2015-14

지방자치단체 환경영향평가 조례 운영현황 및 효율화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Tel 044.415.7777 Fax 044.415.7799

<http://www.kei.re.kr>



ISBN 978-89-6464-941-5